

폐 기 결 과 보 고 서		
피 의 자	성명	주민등록번호
	직업	
	주거	
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사 건	사 건 번 호	
	통 신 제 한 조 치 허 가 서 번 호	
	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종 료 일	
	전 기 통 신 보 관 등 승 인 서 번 호	
	전 기 통 신 보 관 등 승 인 (기 각) 통 지 일	20
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12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였습니다.		
폐 기 의 이 유		
폐 기 의 범 위		
폐 기 의 일 시	20 :	
전기통신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진행 경과 및 요지 , 그 주체 및 방법		
폐 기 한 전기통신의 목록		
20		
○○○검찰청		
검사 		